

 <b>자본시장연구원</b>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<b>보도자료</b>	<b>보도일시</b>	<b>2026. 01. 22. 10:00 부터</b>
	<b>보고서명</b>	<b>투자자 피해구제제도 개선 쟁점과 방향</b>
	<b>문의</b>	금융산업실 이성복 선임연구위원 (02-3771-0657, javanfish@kcmi.re.kr)

- 자본시장연구(원장: 김세완)은 2026년 1월 22일자로 '투자자 피해구제제도 개선 쟁점과 방향' 제하의 이슈보고서(저자: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 이성복)를 발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- 본 보고서는 투자자 신뢰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실효성 있는 투자자 피해구제제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현행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피해구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.
- 현행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.
  - 현행 제도로는 공시위반,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위법행위와 관련된 투자자 피해를 구제할 수 없고,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의 경우 금융회사 파산 시에 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  -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금융분쟁제도를 통해 구제하는 경우 투자자 자기책임보다 피해구제를 더 중시하고 자율배상에 크게 의존하는 점도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
- 본 보고서는 그 동안의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자자 피해구제제도가 개선되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.
  - 투자자 피해구제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요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주요쟁점 간 선후 및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나열식으로 제시하다 보니 정합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였습니다.
  - 특히 배상과 보상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투자자 피해구제에 초점을

맞추다보니 가해자 부담 원칙이 준수되지 않거나 재원 부담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방안이 제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.

- 이에 본 보고서는 복잡하게 얽힌 주요쟁점 간 선후 및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주요쟁점을 정합적으로 검토하였고, 이를 토대로 투자자 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.
  - 첫째, 현행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투자자 피해구제 공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.
    - 공시위반,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,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
  - 둘째, 이를 위해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피해구제 성격과 구제재원 출처가 일치되도록 피해 배상과 보상을 명확히 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.
    - 이 경우 복잡하게 얽힌 주요쟁점들을 보다 명료하게 결정할 수 있고, 재원 부담의 형평성과 책임 귀속의 명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  - 셋째, 투자자 피해를 현행보다 더 포괄적으로 구제하더라도,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.
    - 특히 여러 개별적 제약으로 인해 사법적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상기 개선 방향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개선안을 구체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.
- 본 보고서의 전문과 카드뉴스는 자본시장연구원 홈페이지([www.kcmi.re.kr](http://www.kcmi.re.kr))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